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해설서

2017. 3

방송통신위원회

I.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법」 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요지

본 조는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의 제정 근거와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2. 제정근거

「방송법」 제98조의2(재산상황의 공표) 및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2(재산상황의 공표)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계처리 및 보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재무제표를 본 지침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일반기업의 회계처리기준은 주주, 채권자 및 투자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사업은 공익사업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정책을 위한 회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별도의 회계정리가 필요하다. 때문에 방송사업자는 일반기업으로서 회계처리와 방송사업자로서의 회계정리로 상이한 목적을 위하여 2가지의 회계정보를 산출하게 된다.

회계처리는 회계적인 사건을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회사 전체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회계분리는 회계적인 사건을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역무별 회계분리를 하여 재산상황을 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향후 방송회계가 발전해 갈 방향이기도 하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방송법」 제31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평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기금징수를 위해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1. 요지

본 조는 지침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방송평가 및 기금징수를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경우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방송사업자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제3호,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용어의정의)는 방송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사업자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정의)제5호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4. 재산상황 공표

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년도 3월 말까지 제출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6월말까지 정리하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표한다. 재산상황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분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재산상황 공표집'은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표집에 단순히 수록하여 정리한 것이다. 사업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종합하면 시장별로 재산상황을 집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방송시장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5. 방송평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및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을 심사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도 심사기준의 하나이다.(방송법 제17조)

내용영역은 개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방송프로그램의 질 및 방송내용과 관련된 사항이며, 편성영역은 대상별 편성비율의 적절성 및 대상별 시간량의 적절성 등과 관련된 사항이며, 운영영역은 방송사업 및 사업운영의 적절성과 관련된 사항이다. 특히 운영영역에서 지침에 의해 작성된 회계자료가 필요하다.

6. 기금징수

방송사업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하는 근거 및 성격은 방송사업이란 전파라는 공공재를 활용하거나, 특정한 사업권을 부여 받아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즉, 기금징수는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수와 특혜적인 수익을 징수하는 것이다.

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자 특성에 따라 방송광고 매출액, 방송서비스 매출액, 결산상의 영업이익의 산정기준으로 징수한다. 방송사업자는 아니지만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에게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따라 기금을 징수한다.

제3조(기업회계기준 등의 준용)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재무제표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 관행에 따라 작성한다.

1. 요지

본 조는 지침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회계 처리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관행에 따라 회계 처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기업회계기준과 회계 관행

일반적으로 상장기업 및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기업의 경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그 외 기업은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기업회계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지 않은 경우 업계에서 회계처리에 사용하고 있는 관행이다. 즉, 업계의 회계 관행은 방송사업에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외부 감사인으로 부터 인정을 받은 회계처리를 말한다.

제 2 장 재무제표

제4조(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로 하고 부속명세서는 매출액명세서, 결합판매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협찬매출액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영업통계 및 경영자확인서 등의 명세서로 한다.
② 재무제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을 따르고, 부속명세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을 따른다.

1. 요지

본 조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종류를 규정한 것이다.

2.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본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이다.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에서의 사업자의 재무상태를 표시한 표이며,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구성, 내용 및 상태를 표시한다. 사업자가 일정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이에 대한 채권자와 주주의 몫을 표시함으로 재무건전성을 보여 주는 표이다.

3.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본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이다. 손익계산서는 사업자의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표로서 수익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익은 재화의 판매 혹은 용역 제공에 의한 수입액이며, 비용은 수익창출을 위해 소모한 경제적 자원의 소비액이다.

4. 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본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매출액명세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 '재산상황 경영자확인서'까지이다. 부속명세서는 방송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회계정보를 표로 작성한 것이다.

제5조(사업자의 매출액 구분) ① 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이하 "기타사업" 이라 한다)을 겸영하는 경우 기타사업의 매출액을 방송사업매출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매출액을 포함, 이하 동일)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사업자는 방송사업매출액을 방송법 제2조 제20의 2호에 따른 채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요지

본 조는 지침의 목적인 방송사업회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이하 '기타사업'이라한다)을 겸영하는 경우 방송사업매출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매출액을 포함, 이하 동일)을 기타사업 매출액과 구분하여 표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업매출액을 채널별로 구분 집계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기타사업

방송법 제2조는 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 이외의 사업이 기타사업이다. 예를 들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은 기타사업으로 분류되며, 사업자들이 부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사업과 공익사업 등도 기타사업이다.

3. 채널별

방송법 제2조 제20의 2호는 채널을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 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로 정하고 있다. **채널별 매출액 작성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71조제3항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6조(합병 등에 따른 회계처리) ①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병하는 경우 소멸되는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재무제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별지서식으로 작성하고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
②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분할(양도)법인은 분할(양도)기일의 재무제표를 별지서식으로 작성하여 분할(양도)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

1. 요지

본 조는 사업자의 합병 또는 사업의 분할(양도)시 합병기일 또는 분할(양도)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멸회사 또는 분할(양도)법인의 재무제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합병기일과 분할(양도)기일

합병기일은 합병 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자산 및 부채 등을 승계한 날을 말한다. 분할(양도)기일은 사업의 분할 또는 양도 시 피분할(피양도) 회사가 분할(양도)회사의 자산 및 부채 등을 승계한 날을 말한다.
분할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영업양도는 분할과 유사하나 주주권 및 경영권이 분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① 합병 시

사례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소멸법인)	재무제표 제출 의무
1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소멸되는 방송사업자의 합병기일 시점의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2	비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② 분할(양도) 시

사례	분할(양도) 법인	피분할(피양도) 법인	재무제표 제출 의무
1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분할(양도)법인의 분할(양도)기일 시점의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분할(양도)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2	방송사업자	비방송사업자	

3. 합병 사례

① 합병법인이 합병존속법인인 경우(A+B=A)

사례	합병 법인(A)	피합병 법인(B)	합병존속 법인(A)	재무제표제출
1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 A: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써 다음해 3월 제출 (A의 일년치 방송사업손익+합병후 B의 방송사업손익) · B : 합병 소멸이후 3개월이내 제출 (기초~합병일까지 방송사업손익)
2	방송사업자	비방송 사업자	방송사업자	· A: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써 다음해 3월 제출 (A의 일년치 방송사업손익)
3	비방송 사업자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 A: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써 다음해 3월 제출 (합병후 B의 방송사업손익) · B : 합병 소멸이후 3개월이내 제출 (기초~합병일까지 방송사업손익)
4	비방송 사업자	비방송 사업자	비방송 사업자	해당없음

② 신설합병인 경우(A+B=C)

사례	합병 법인(A)	피합병 법인(B)	합병존속 법인(C)	재무제표제출
1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 A&B: 합병소멸이후 3개월이내 각각 제출 (기초~합병일까지 방송사업손익) · C :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써 다음해 3월 제출 (합병일~기말까지 방송사업손익)
2	방송사업자	비방송 사업자	방송사업자	· A: 합병소멸이후 3개월이내 제출 (기초~합병일까지 방송사업손익) · C :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써 다음해 3월 제출 (합병일~기말까지 방송사업손익)
3	비방송 사업자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 B : 합병소멸이후 3개월이내 제출 (기초~합병일까지 방송사업손익) · C :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써 다음해 3월 제출 (합병일~기말까지 방송사업손익)
4	비방송 사업자	비방송 사업자	비방송 사업자	해당없음

4. 분할 사례(A=A+B)

사례	분할 법인(A)	분할존속 법인(A)	분할신설 법인(B)	재무제표제출
1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비방송 사업자	· A: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써 다음해 3월 제출 (A의 일년치 방송사업손익)
2	방송사업자	비방송 사업자	방송사업자	· A: 분할일로부터 3개월이내 제출 (기초~분할일까지 방송사업손익) · B :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써 다음해 3월 제출 (분할일~기말까지 방송사업손익)
3	방송사업자 (E방송사업 +F방송사업)	방송사업자 (E방송사업)	방송사업자 (F방송사업)	· A : 분할일로부터 3개월이내 제출 (기초~분할일까지 분할 F방송사업손익) · A : 기말 현재 방송사업로써 다음해 3월 제출 (분할하지 않은 E방송사업손익 일년치) · B :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써 다음해 3월 제출 (분할일~기말까지 F방송사업손익)

5. 양도 사례

사례	양도 법인(A)	양도 법인(A)	양수 법인(B)	재무제표제출
1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비방송 사업자	· A: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써 다음해 3월 제출 (A의 일년치 방송사업손익)
2	방송사업자	비방송 사업자	방송사업자	· A: 양도일로부터 3개월이내 제출 (기초~양도일까지 방송사업손익) · B :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써 다음해 3월 제출 (양수일~기말까지 방송사업손익)
3	방송사업자 (A방송사업+B방송사업)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 A : 양도일로부터 3개월이내 제출 (기초~양도일까지 양도방송사업손익) · A :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써 다음해 3월 제출 (양도하지 않은 방송사업손익 일년치) · B :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써 다음해 3월 제출 (양수일~기말까지 방송사업손익)

제7조(계정의 구분) 사업자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재산상황 상의 적절한 계정으로 표시 후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요지

본 조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의 계정 과목을 이 지침에서 정한 과목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계정(과목)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여러 항목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단위이며, 계정을 구분하기 위하여 붙이는 이름을 계정과목이라 한다.

3. 주석

주석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이다. 회사의 재무에 관한 정보를 재무상태표 등의 명세서만으로는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 필수정보가 주석으로 공시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주석은 본 지침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만으로 나타낼 수 없는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석 작성 여부는 각 사업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제 3 장 재무상태표

제8조(선급금) 상품 및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급한 일반선급금과 제5장 방송프로그램 회계처리에 따른 결산일 현재 제작 또는 구입 중인 방송프로그램선급금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1. 요지

본 조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선급금과 제5장 방송프로그램 회계처리에 의해 회계 처리된 방송프로그램선급금을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선급금

선급금이란 상품 · 원재료의 매입을 위하여 또는 제품의 외주가공을 위하여 매입처에게 대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미리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선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래는 그것이 정상적 영업순환과정에서 일반적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후에 매입계정(買入計定)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3. 방송프로그램선급금

본 지침 제17조는 사업자가 결산일 현재 제작 혹은 구매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을 위하여 제작 혹은 구입에 지불한 지출액을 결산일에 수정분개를 통하여 방송프로그램선급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조(재고자산)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이나 용역을 제공하는데 투입될 원재료 및 소모품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방송 촬영에 필요한 필름, 테이프, 협찬물품 및 방송장비 수선용 부품 등과 유료방송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셋톱박스 등의 자산이 포함된다. 다만,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1. 요지

본 조는 재고자산을 정의하고, 재고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재고자산의 예를 열거하고, 재고자산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있다.

2. 재고자산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자산분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방송프로그램 자산이 "유동자산인가? 혹은 비유동자산인가?"라는 논란이 있고, 비유동자산이라면 "유형자산인가 혹은 무형자산인가?"라는 논란이 있다. 본 지침은 방송프로그램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동자산인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 쉬운 **방송프로그램을 재고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외부 감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아 외부감사인이 동의하는 경우 재고자산 처리할 수 있으나 방송법상 방송회계는 해당 지침을 통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따라서 재산상황 작성시에는 방송프로그램을 재고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음)**

3. 협찬물품

외부의 주체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필요하여 협찬 받은 물품을 말한다.

4. 셋톱박스

텔레비전 세트 위에 놓고 이용하는 상자모양의 기기로 주문형 비디오(VOD), 영상판

홈쇼핑, 네트워크 게임 등 차세대 쌍방향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 혹은 대화형 텔레비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가정용 통신 단말기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 ① 유형자산의 과목은 방송통신설비와 일반지원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방송통신설비는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기타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자산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설비 : 방송프로그램 · 광고 등의 제작 · 송출 · 중계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치 및 부속설비,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실물세트 · 의상 · 미술품 · 각종 소도구 등을 말한다.
2. 단말장치 :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수신용 가입자설비인 컨버터와 셋톱박스 등으로 한다
3. 전송설비 : 교환설비 혹은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변환 재생하거나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선로설비: 방송프로그램 혹은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로 및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및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정보처리설비: 제작 혹은 구입방송프로그램을 저장·처리하는 장치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전원설비: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 등의 설비를 말한다.
7. 건설중인 자산 : 건설중인 방송통신설비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와(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을 포함), 방송통신설비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한다.
8. 기타 방송통신유형자산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송통신사업 관련 설비자산으로 한다.

1. 요지

본 조는 방송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유형자산을 방송통신설비와 일반지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2. 부속설비와 부대설비

부속설비는 주설비의 부속되는 설비를 말하며, 부대설비는 설비의 본원적인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설비를 말한다.

3. 전송설비

전송단국장치는 단국 혹은 단말에서 다수의 신호내용을 묶는 장치이다. 중계장치는 통신시스템 중간에서 약해진 신호를 받아 증폭하여 재전송하거나, 찌그러진 신호의 파형을 정형(trimming)하여 타이밍을 조정하거나 재구성하여 송신하는 장치이다. 다중화장치는 다중화 기술을 이용하여 하나의 회선 또는 전송로를 분할하여 개별적으로 독립된 다수의 호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이다. 분배장치는 주파수로 신호를 분리하는 장치로 전화 음성에 사용되는 4kHz 정도의 저주파 대역의 신호와 디지털 가입자 회선 모뎀이 변조에 사용되는 고주파대역을 분리한다.

4. 선로설비

케이블(cable)은 전기적/광학적 파동을 전파(도파)하는 것을 말하며, 재질, 절연형태, 외피구조, 외장종, 구조, 용도, 구간, 직경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전주(electric pole)는 가공 케이블을 지지하는 기둥을 말하며, 목주, 철근콘크리트주, 철주 등이 있다.

관로(conduit line)는 지하에 시설된 인공, 수공, 국내통신구, 국내인공 등을 상호간에 연결해주는 소규모의 보호시설을 말한다. 보통 합성수지관을 매설하여 그 내부에 통신 케이블을 수용한다. 배관(piping)은 관을 밸브, 관이음 등을 이용하여 접속하고 배치하는 것이다. 관은 모든 동력 장치나 액체, 기체의 수송, 이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그 용도나 유체 등에 적합한 배관이 되어야 하며, 그것에 따라 가스 배관, 급수 배관, 난방 배관 등 여러 가지로 부른다.

맨홀(manhole)은 통신케이블의 인입・접속작업, 관로 및 케이블의 점검 등을 목적으로 지하에 설치하여 그 안에서 사람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지하구조물을 말한다. 반면에 핸드홀(hand hole)은 소규모 지하 케이블의 설치, 철거작업 및 접속점을 수용 보호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되는 소규모 구조물을 말한다. 배선반(distributing board)은 외선을 옥외장치로 인입하는 곳에 설치된 설비로 외부 선로 시설과 내부 교환 시설과의 단자를 연결시킨다.

5. 전원설비

수변전장치는 수전장치와 변전장치를 말한다. 수전장치는 건물이나 공장에 전력을 받아들이는 장치이고, 변전장치는 전력회사로부터 받아들인 전력을 사용하기에 적당한 전압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장치를 말한다. 정류기는 교류전력에서 직류전력을 얻기 위해 정류작용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전기적인 회로소자 또는 장치이며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통과시키는 기능을 가졌다. 축전기는 전기회로나 설비에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이며, 전원반은 전원 설비의 감시 및 통제를 위한 패널을 의미한다. 예비용 발동 발전기는 정전 시 사용을 위해 보유중인 발전기를 말한다.

③ 일반지원자산은 방송통신설비외 유형자산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토지 : 영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 : 영업을 위하여 토지에 건설한 건축물과 냉난방・조명・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3. 구축물 : 건물 이외의 토목설비, 공작물 및 이들의 부속설비로서 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갱도・굴뚝・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비품 : 영업활동 및 판매관리활동에 필요한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집기로 한다.
5. 차량운반구 :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송출과 관련한 차량운반구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6. 건설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와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을 포함),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한다.
7. 기타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송통신설비외 유형자산으로 한다.

1. 요지

본 조는 방송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지원자산을 분류하고 정의하고 있다.

2. 잡종지

잡종지(雜種地)는 지적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한 지목 중 하나로써 방송사업에서는 송신소, 수신소의 부지가 여기에 속한다.

제11조(무형자산의 분류) 무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영업권 : 기업의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과정에서 유상으로 구입한 매입영업권으로 한다.
2. 방송프로그램 : 방송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권리를 포함하며 취득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제작방송프로그램(자체제작 및 외주제작)
나. 구입방송프로그램
3. 개발비 :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기타무형자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1. 요지

본 조는 방송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무형자산을 분류하고 정의하고 있다. 방송사업 운영에 가장 중요한 방송프로그램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유형에 따라 제작방송프로그램과 구입방송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자체제작 및 외주제작

자체제작은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사업자가 직접 제작하는 것을 말하고, 외주제작

은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외부의 제작자가 제작하여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제작과 외주제작의 구분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에서 정함에 따른다.

3. 구입방송프로그램

사업자가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제작 완료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 목적으로 구입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구입방송프로그램이 외부제작방송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제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 4 장 손익계산서

제12조(매출액의 분류) ① 매출액은 방송사업매출액과 기타사업매출액으로 구분하고, 방송사업매출액은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며 관련 매출액명세서를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지

제12조 제1항은 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군으로 구분하고, 특성에 따라 방송사업 매출액을 분류하고 있다.

2. 매출액

방송사의 매출액이란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2호의 고유 방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된 매출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정의) 4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된 매출액을 말한다.

3. 사업자의 특성

방송사업매출액을 집계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사업자를 3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②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③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4. 매출액명세서

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와 이전연도의 매출액을 표시하고, 매출액명세서는 당해연도의 매출액만을 표시한다. 손익계산서는 기타 방송사업매출액과 기타사업매출액을 세분화하지 않고, 매출액명세서는 세분화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명세서는 매출액을 방송매체별로 구분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매출액명세서

기업명: (단위: 원)

과 목			매체구분					특수관계자 매출액
			TV	RADIO	지상파 DMB	기 타	합계	
I.	방송사업매출액							
	1.							
	…							
	7.	기타방송사업매출액						
	가)	방송시설임대매출액						
	나)	행사매출액						
	다)	방송발전기금지원액 (프로그램제작지원)						
	라)	기타국고보조금 등 수익						
	마)	기타						
II.	기타사업매출액							
	1.	부동산임대사업매출액						
	2.	출판사업매출액						
	3.	문화사업매출액						
	4.	기타						
합 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매출액명세서는 기타방송사업매출액을 방송시설임대매출액, 행사매출액, 방송발전기금지원액(프로그램제작지원), 기타보조금 등 수익으로, 기타사업매출액을 부동산임대매출액, 출판사업매출액, 문화사업매출액 및 기타사업매출액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명세서의 매체별 구분은 TV, RADIO, 지상파DMB 및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기타사업매출액은 전기통신사업매출액, 부동산임대사업매출액 및 기타로 구분되고, 방송방식은 아날로그, 디지털 및 기타로 구분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기타사업매출액은 부동산임대사업매출액과 기타로 구분되고, 매체구분으로 SO, 위성방송, 지상파DMB, IPTV 및 기타이다.

> ②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하 '지상파DMB'라 한다)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매출액 :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텔레비전 수신료로 한다.
> 2. 재송신매출액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사업자'라 한다)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 등에게 실시간방송을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 3.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제12조 제4항 제1호의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을 말한다.
> 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로 제2호의 재송신매출액을 제외한다.

1. 요지

제1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분류하고 있다.

2. 방송사업매출액 : 사업자가 방송법 제2조제2호의 고유 방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된 매출액을 말한다.

3. 실시간방송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보내고 있는 방송을 동일한 시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동시재송신(방송법시행령 제61조제4항제1호)하는 것을 말한다.

5. 광고매출액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 방송함에 따른 매출액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을 모두 포함하며, 겸영사업자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징수되는 지상파광고매출액과 이동멀티미디어사업 광고매출액,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6.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7. 기타방송사업매출액 : 방송사업매출액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1. 요지

제1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매출액을 사업별로 구분하고, 협찬매출액을 매체 및 내용별로 구분하고 있다.

2. 협찬매출액명세서

방송제작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상대방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협찬매출액은 매체에 따라 TV, RADIO, DMB별로 분류하고, 협찬의 내용에 따라 다시 공익성캠페인, 제작협찬, 공익행사 및 기타로 구분한다.

구분	공익성 캠페인	제작협찬		공익행사 (문화예술 등)	기타 (시상품 등)	합계
		자체제작	외주제작			
TV						
...						
합계						

③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유료방송수신료매출액 : 유료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을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 주문형비디오(이하 'VOD'라 한다)매출액, 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및 기타수신료매출액으로 구분한다.
가.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 채널 단위로 묶어 파는 기본 상품의 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
나.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 기본 채널 단위 묶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널 추가에 따라 채널마다 추가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채널 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
다. 유료VOD수신료매출액 : 유료VOD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라. 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 방송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시청자에게 청구하는 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
마. 기타수신료매출액 : 수신료 매출액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 제외한 기타수신료 매출액으로 한다.

1. 요지

제12조 제3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액을 구분하고 있다. 제1호는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수신료를 구분하고 있다.

2. 유료방송수신료

방송서비스에 가입 혹은 특정한 방송서비스를 요청한 가입자로부터 서비스 제공대가로 수수하는 요금으로 서비스 내용에 따라 기본채널수신료, 유료채널수신료, 유료VOD수신료로 구분된다. 주문형비디오(Video On Demand) 서비스는 기존의 공중파방송과는 다르게 인터넷 등의 통신회선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시간의 제한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3. 중계유선방송

지상파방송 또는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2.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수익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으로 한다.
3.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 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4.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송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5. 가입및시설설치매출액 : 신규 가입자 유치에 따른 가입비 및 방송수신 설비 설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6. 단말장치대여(판매)매출액 : 가입자에게 단말장치를 대여(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7. 위성사용료매출액 : 위성사용료 명목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받는 대가를 말한다.
8. 홈쇼핑방송매출액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제12조제4항제7호의 홈쇼핑방송매출액을 말한다.
9. 기타방송사업 매출액 : 방송사업매출액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1. 요지

제12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는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제12조 제3항 제4호부터 제8호는 유료방송서비스의 가입과정과 채널사용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을 정의하고 있다.

2. 서비스 가입 관련 매출액

제5호와 제 6호는 서비스 가입 관련 매출액을 정의하고 있다. 방송서비스에 가입절차와 방송수신을 위한 시설설치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응되는 수익으로 가입비와 설치비가 있다. 또한 서비스를 수신하기 위한 단말기 매매 및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

3. 채널 사용 관련 매출액

제4호와 제 7호는 채널 관련 매출액을 정의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통상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대가로 수신료를 분배한다. 그러나 홈쇼핑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는 방송프로그램 송출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이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성사업자에 요청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위성에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위성방송사업자가 위성사업자와 협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전송에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위성사용료로 받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위성사용료를 지급받아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없이(수익 창출없이) 단순히 위성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라면 이는 예수금 성격이므로 지급받을 때 예수금 처리 후 지급시 소멸될 것이다.

4. 기타 방송사업 매출액

유료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물건 판매 등으로부터 정산 받는 각종 대가 등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포함되지 아니하는 방송사업매출액을 말한다.

④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 등의 방송채널에 방송프로그램(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포함, 이하 동일)을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은 수신료분배 매출액을 말한다.
2.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수익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으로 한다.
3.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 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1. 요지

제12조 제4항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매출액을 구분하고 있다. 제1호의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이며, 제2호와 제3호는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다.

2. 수신료분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신료수익의 일부를 분배받는다. 규제당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업자간의 방송수신료 분배비율을 방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즉, 재허가 조건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수신료 배분율을 규제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촉진하고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 합리적인 수신료 분배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재허가시 평가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 수신료 분배를 위한 가이드라인 요약 >

(지급 비율) SO별 디지털 전환율에 따라 25~28% 이상으로 구분

(지급 대상) 기본채널,유료채널,VOD

(지급 방식) VOD 확대 등에 따른 기본채널 지급분 감소를 고려, 기본채널 지급분을 '12년은 전년대비 5% 이상(단, 유료채널·유료VOD를 제외한 '11년도 PP지급분이 25%를 초과하는 SO는 제외), '13년은 전년대비 2.5% 이상 확대 ('14년 이후는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재정비)

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액으로 한다.
5. 방송시설임대매출액 : 방송기계기구 및 방송차량운반구 등의 임대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6. 행사매출액 :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관련된 행사개최에 따른 매출액으로,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행사의 매출액은 기타사업매출액으로 한다.

1. 요지

제12조 제4항 제4호부터 제6호 까지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을 구분하고 있다.

2. 방송프로그램판매

방송프로그램판매는 방송프로그램제공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방송채널에 방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때 판매란 방영기간 및 횟수 등의 조건을 통한 방영권 판매, 저작권 판매, 판권판매 등의 다양한 판매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3. 행사매출액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관련된 행사라 함은 행사 자체를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방송하는 것은 물론 행사를 방송하지 않더라도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홍보하기 위한 행사매출액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외의 행사매출액은 기타사업매출액으로 처리한다.

7. 홈쇼핑방송매출액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사업자")의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수수료매출액과 상품 등 매출액으로 구분한다.
   가. 수수료매출액 : 홈쇼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을 방송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나. 상품 등 매출액 : 홈쇼핑사업자가 방송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는 상품 등의 판매액으로 한다.
   다. 기타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금액이 중요한 경우 주석기재 한다.
8. 기타방송사업 매출액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포함되지 않은 방송사업매출액으로 한다.

1. 요지

제12조 제7호는 일반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는 성격이 다른 홈쇼핑사업자의 매출을 수수료 매출액과 상품 등 매출액으로 구분・정의하고 있다.

2. 홈쇼핑방송매출액

방송을 통해서는 소비자 정보를 수집한 후 방송 이후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한 후 수수료를 정산하는 보험, 여행상품, 핸드폰 등의 판매 수익도 방송사업매출액으로 처리한다.

⑤ 기타사업매출액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해 창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기타사업매출액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영업보고서상의 전기통신사업매출액과 기타매출액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기통신사업 매출액 :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등 전기통신사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다.
2. 기타매출액 : 제1호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사업 매출액으로 한다.

1. 요지

제12조 제5항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 매출액을 기타사업매출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을 겸영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인 전기통신사업의 매출액을 구분하여 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전기통신사업 매출액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9조 제1항은 영업수익을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구분한다. 회계학적 거래로 인식할 수 없는 내부거래수익과 자가소비사업용 수익은 규제목적상 영업수익으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상의 영업수익에서 내부거래수익과 자가소비사업용 수익을 제외한 수익이다.

3. 기타 매출액

홈쇼핑사업자의 카달로그 판매수익, 인터넷 몰 판매수익, 상품 포장 관련 수익 등은 기타사업매출액의 기타 매출액으로 처리한다.

제13조(영업비용의 분류) ① 영업비용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로 구분하고 매출원가명세서를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요지

제13조 제1항은 영업비용을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로 구분하고,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2.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매출원가는 매출액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상품 및 제품 등의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지침은 방송사업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별지 제5호(매출원가명세서)와 같이 방송프로그램제작비, 방송프로그램구입비 및 기타로 구분하고,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기재토록 하였다.

구분		금액		
방송프로그램비용				
① 방송프로그램제작비		직접원가	간접원가	합계
1. 인건비	급여(각종 제수당 포함)			
	잡급			
	퇴직급여			
	소계			
2. 인건비제외 직·간접제작비	원고출연료			
	음향영상재료비			
	미술재료비			
	기획비			
	제작진행비			
	외부장비이용료			
	외부시설이용료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방송프로그램 외 무형자산) 상각비			
	여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피복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법정부담금			
	보험료			
	지급수수료			
	임차료			
	조사연구비			
	회의비			
	기타			
	소계			
3. 외주제작비	외주제작비			
당기 제작원가(1+2+3)				
②방송프로그램구입비	무형자산(구입방송프로그램) 상각비			
	기타 방송프로그램구입비			
	소계			
I. 방송프로그램비용(①+②)				
II. 기타				
III. 매출원가(I+II)				

※ 전기이전에 선급금 또는 무형자산(제작방송프로그램) 처리되었던 제작프로그램이 당기 방영된 경우 원가(비용 성격에 따른 원가계정에 각각 기입)처리하며 무형자산 처리 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손상차손) 처리한다.

※ III. 매출원가는 I.방송프로그램비용(방송프로그램 제작비과 방송프로그램 구입비)과 II.기타매출원가로 구성된다.

※ 제작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하여 합리적 기간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경우에도 무형자산상각비 계정이 아닌 당기 상각액을 발생 원천에 따라 인건비/인건비 제외 직·간접 제작비/외주제작비로 구분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 ▢은 기존 지침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에 해당

판매관리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판매비는 주로 판매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고, 일반관리비는 회사의 관리 및 유지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프로그램비용
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결산일 현재 제작이 완료되어 방영된 제작방송프로그램으로써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용 및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당기 무형자산상각액을 말한다.
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어 방영된 구입방송프로그램으로써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구입비용 및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당기 무형자산상각액을 말한다.
2. 기타 : 방송프로그램비용 외 매출원가로 한다.

1. 요지

제13조 제2항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매출원가를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2. 방송프로그램비용

방송프로그램을 취득유형에 따라 제작과 구입방송프로그램으로 구분함에 따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방송프로그램비용으로 구분하고, 방송프로그램제작비와 방송프로그램구입비로 구분하고 있다.

3. 제작비와 구입비

방송프로그램비용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방송프로그램이 제작 또는 구입이 완료되고, 방영이 되어야 한다. 재방영이 불가한 경우 제작 또는 구입에 관련된 모든 제작비용과 구입비용이 제작비와 구입비로 인식하지만, 재방영이 확실한 경우는 방영이 될 때마다 제작비용과 구입비용의 일부만이 무형자산상각액으로 인정되고 제작비와 구입비로 인식된다.

③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인건비 : 종업원과 임원의 급여 · 상여금 · 제수당 및 퇴직급여 등으로써 판매관리비 성격의 비용만을 말한다.
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 · 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물리적 · 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으로 한다.
3. 무형자산상각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 · 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물리적 · 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으로 한다.
4. 복리후생비 : 임직원의 복리 및 후생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한다.
5. 세금과공과 : 법인세를 제외한 영업과 관련된 세금 및 각종 공과금을 말한다.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 · 예술 진흥사업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으로 한다.
나. 기타세금과공과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제외한 기타의 세금과공과로 한다.
6. 광고대행수수료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게 광고판매 위탁을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한다.
7. 지급수수료 : 사업자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로 한다
8. 지급임차료 :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등을 빌려 쓰고 지급한 사용료로 한다.
9. 교육훈련비 :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직접비로 한다.
10. 기타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

1. 요지

제13조 제3항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판매관리비를 분류하고 정의하고 있다.

2. 진부화

자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또는 기능적 감가원인이다. 물질적으로 아무런 가치의 감소가 없어도 새로운 신규 설비가 등장하여 상대적 가치가 낮아지거나 비효율 등에 의해 자산 가치를 감소시켜야 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대행수수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을 방송할 수 있으며,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불하는 대가가 광고대행수수료이다.

④ 유료방송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프로그램비용 : 지역 채널 운영 등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구입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제2항의 제1호 가목과 같다.
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제2항의 제1호 나목과 같다.
다. 방송프로그램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제공 대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 제3항 제1호가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무료 VOD 프로그램 제공 대가를 포함)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
(2) 유료채널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 제3항 제1호나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
(3) 유료VOD 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 제3항 제1호다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
(4) 재송신비용 :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대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1. 요지

제4항은 유료방송사업자의 매출원가를 분류・정의하고 있으며, 제1호는 방송프로그램비용을 세분화 하고 있다.

2. 방송프로그램사용료

사용료는 방송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매출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프로그램사용에 대한 대가이다.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 유료채널프로그램사용료, 유료VOD 프로그램사용료는

각각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VOD수신료매출액과 대응된다. 다만,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 VOD 프로그램 제공 대가는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에 포함한다. 매출액에서 수신료를 차감하면 채널별 매출이익을 손쉽게 인식할 있다.

3. 재송신

재송신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송신하는 것이다.

2. 기타 매출원가 : 방송프로그램비용 외 매출원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전송망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하여 전송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
나. 위성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하여 위성방송사업자가 위성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
다. 기타 : 가목과 나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원가로 한다.

1. 요지

제4항 제2호는 방송프로그램비용 이외의 매출원가를 정의하는 것으로, 특히 방송프로그램 전송에 발생하는 비용을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계정을 설정하고 있다.

2. 전송망사용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전송망이 없는 경우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해 전송망사업자의 전송망을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지급하게 되는 비용이 전송망사용료이다.

3. 위성사용료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하여 위성사업자에게 위성 사용을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⑤ 유료방송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인건비 : 제3항 제1호를 준용한다.
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제3항 제2호를 준용한다.
3. 무형자산상각비 : 제3항 제3호를 준용한다.
4. 복리후생비 : 제3항 제4호를 준용한다.
5. 세금과공과 : 제3항 제5호를 준용한다.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제3항 제5호 가목을 준용한다.
나. 기타세금과공과 : 제3항 제5호 나목을 준용한다.
6. 광고대행수수료 : 제3항 제6호를 준용한다.
7. 광고선전비 : 영업활동 수행상 지출된 광고선전비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8. 판매촉진비 : 고객유치수수료, 고객유치수당, 홍보용품구입비 및 전단지제작비 등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9. 지급수수료 : 제3항 제7호를 준용한다.
10. 지급임차료 : 제3항 제8호를 준용한다.
11. 교육훈련비 : 제3항 제9조를 준용한다.
12. 기타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

1. 요지

제5항은 유료방송사업자의 판매관리비를 정의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추가적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제7호 광고선전비와 제8호 판매촉진비를 추가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프로그램비용
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제2항제1호가목과 같다.
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제2항제1호나목과 같다.
2. 기타 : 방송프로그램비용 외 매출원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홈쇼핑송출수수료 : 홈쇼핑방송사업자가 홈쇼핑방송을 송출하고 지출하는 수수료 비용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및 기타로 구분하여 인식한다.
나. 전송망사용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하여 전송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
다. 위성사용료 :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라. 상품 등 매출원가 : 홈쇼핑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 등의 매출원가를 말한다.
마. 기타 : 제1호 및 가목부터 라목까지 포함되지 않는 매출원가로 한다.

1. 요지

제6항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원가를 구분・정의하고 있다. 제2호는 방송프로그램 송출 혹은 전송과 관련한 비용과 홈쇼핑사업자의 상품 등과 관련된 비용을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계정을 설정하고 있다.

2. 홈쇼핑송출수수료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항목으로 홈쇼핑사업자가 종합유선사업자 등에게 지불하는 방송프로그램 송출대가이며, 송출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3. 전송망사용료와 위성사용료

채널 사용을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료로 전송사업자 혹은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위성사용료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위성사용료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계정이다.

4. 상품 등 매출원가

상품 등 매출원가는 상품 등 매출액과 대응되는 비용으로, 홈쇼핑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매입원가이다.

⑦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인건비 : 제5항 제1호를 준용한다.
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제5항 제2호를 준용한다.
3. 무형자산상각비 : 제5항 제3호를 준용한다.
4. 복리후생비 : 제5항 제4호를 준용한다.
5. 세금과공과 : 제5항 제5호를 준용한다.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제5항 제5호 가목을 준용한다.
나. 기타세금과공과 : 제5항 제5호 나목을 준용한다.
6. 광고대행수수료 : 제5항 제6호를 준용한다.
7. 광고선전비 : 제5항 제7호를 준용한다.
8. 지급수수료 : 제5항 제9호를 준용한다.
9. 지급임차료 : 제5항 제10호를 준용한다.
10. 교육훈련비 : 제5항 제11조를 준용한다.
11. 기타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

1. 요지

제7항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판매관리비를 구분하고 정의하고 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가입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촉진활동이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판매관리비에서 판매촉진비만 제외하고 동일하다.

제14조(영업외손익의 구분) 사업자가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과 무관하게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영업외수익 : 보조금(현금 등 포함) 수익, 임대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각종 자산처분이익 · 평가이익, 각종 자산의 손상차손 환입, 대손충당금 환입, 각종 금융수익(이자수익, 배당수익 등), 기타 충당부채환입액 및 잡이익 등으로 영업활동외 수익으로 한다.
2. 영업외비용 :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각종 자산처분손실 · 평가손실, 각종 자산의 손상차손, 기타의 대손상각비, 각종 금융비용(이자비용 등), 기부금, 기타 충당부채 전입액 및 잡손실 등 영업활동외 비용으로 한다.

1. 요지

본 조는 기업 본래의 영업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각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들도 영업외손익을 본 조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으로 영업손익으로 분류된 계정들의 재분류로 인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본 지침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제15조(결합판매매출액 분류) ①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기타사업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결합판매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결합판매 가격을 확실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실제 판매시 약관에 명시된 가격 및 할인율과 다르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개별상품의 이용약관상요금 비율로 배분한다.
② 결합판매매출액은 별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요지

본 조는 2개 이상의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결합판매의 수익을 개별 서비스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외부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재무회계상의 손익계산서와는 달리 본 지침에서는 매출액을 분리하여야 한다.

2. 결합판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2호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결합판매라 한다.

> 제16조(권역별 회계) 2개 이상의 방송사업권역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각각의 방송사업권역별로 본·지점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구분 경리하여 제출 한다. 다만, 구분 경리가 곤란한 재무상태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경영자확인서는 본점이 작성하며, 손익계산서, 결합판매명세서, 매출액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협찬매출액명세서 및 영업통계는 권역별로 제출한다.

1. 요지

2개 이상의 방송사업권역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일부 정보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방송사업권역

방송법 제12조(지역사업권)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업권이 부여된 방송구역을 의미한다. 방송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방송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와 협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방송프로그램 회계처리

> 제17조(제작 방송프로그램) 사업자가 제작(자체제작 및 외주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1. 요지

본 조는 사업자가 자체제작 혹은 외주제작 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회계처리는 거래발생시점, 방영시점 혹은 결산일에 수행하게 되며, 회계처리 방법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완료 여부, 방영여부, 재방영 여부와 재방영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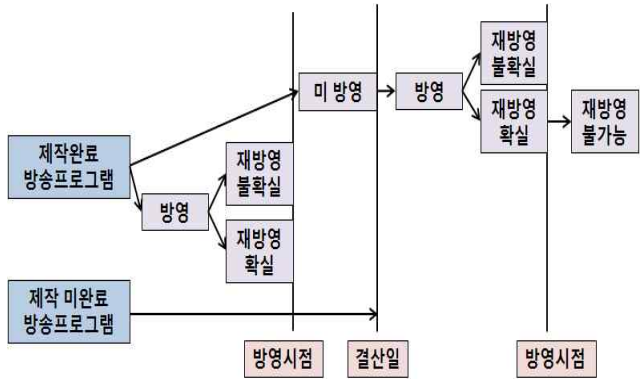

2. 회계처리

가. 거래발생시점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제작 혹은 구입과정에서 관련 지출액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발생하며, 또한 여러 가지의 형태로 발생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출원가를 인건비, 인건비를 제외한 직·간접제작비, 외주제작비로 구분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거래를 발생시키는 시점에서의 회계처리를 살펴보자. 방송제작을 위하여 탤랜트 A씨의 출연료 50,000,000원을 20X1년 7월 31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차변에 탤랜트 A의 출연료 50,000,000원, 대변에 현금 50,000,000원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구입과 관련된 거래는 이와 같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회계처리 한다.

20X1 7/31			
(차) 탤랜트 A의 출연료	50,000,000		
		(대) 현금	50,000,000

나.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

1. 결산일 현재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제작 완료 시점까지 선급금(방송프로그램 선급금)으로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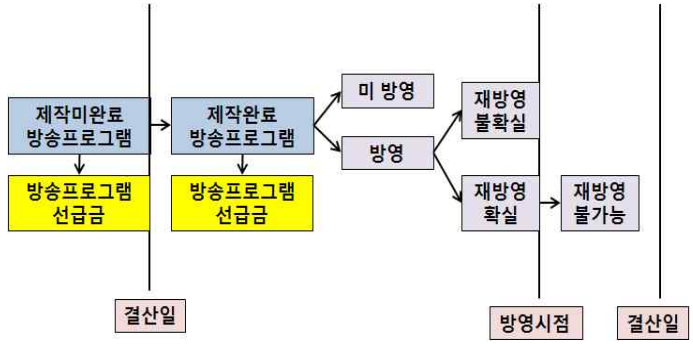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사업자의 회계연도 내에서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면, 제작기간이 통상적인 회계기간인 1년 보다 큰 경우 혹은 제작기간이 1년보다 짧지만, 제작기간이 2개의 회계연도 이상에 걸친 경우이다.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아직 완전한 자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자산인 선급금으로 제작완료될 때까지 회계처리 하되 일반적인 선급금과 구별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20X1 회계연도 결산일에 제작미완료인 "방송프로그램 P"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방송프로그램 P"는 20X1년 6월에 제작을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제작과 관련하여 100,000,000을 지출하였으며, 20X2년 7월 31일까지 제작과 관련하여 200,000,000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한 후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완료하였다. "방송프로그램 P"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지출액에는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X1 12/31
(차) 방송프로그램선급금 100,000,000
(대)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지출액 100,000,000

20X2 7/31
(차) 방송프로그램선급금 200,000,000
(대)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지출액 200,000,000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완료된 이후의 회계처리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영, 미방영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된다.

다. 제작이 완료되고 방영된 이후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

2.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어 방영되었으나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영시점에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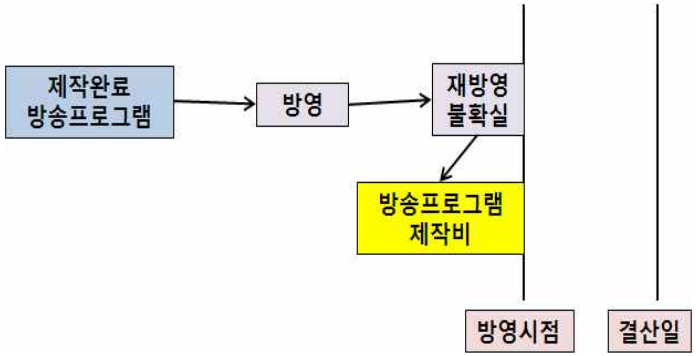

제작완료 방송프로그램은 "방송프로그램 Q"와 같이 당기인 20X1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300,000,000원을 투자하여 7월 31일 제작·완료된 경우와 전기인 20X0 회계연도에 제작을 시작하여 당기인 20X1 회계연도 7월 31일까지 300,000,000원을 투자하여 제작·완료된 "방송프로그램 R"이 있을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 Q와 R이 결산일 이전에 방영되는 시점에서 재방영이 불확실 하다고 판단되면 '방송프로그램제작비'로 아래와 같이 비용화 하여야 한다.

20X1 7/31
(차) 방송프로그램제작비 300,000,000
(대)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지출액 300,000,000
(Q) 혹은 방송프로그램선급금(R) 300,000,000

라. 제작이 완료되고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그램

3.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후 방영시점에 재방영 여부를 고려하여 매출원가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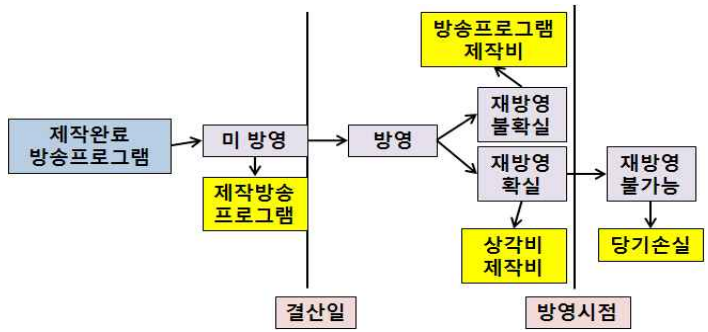

"방송프로그램 S" 는 20X1 회계연도 결산일 이전에 제작 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않았다. 방송프로그램 S는 결산일에 무형자산인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방송프로그램으로 회계처리 한다.

20X1 12/31
(차) 제작방송프로그램 300,000,000
(대)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지출액 300,000,000

미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S"가 방영되는 경우 제작이 완료되고 방영된 방송프로그램과 같이 재방영 여부 등에 따라 방영시점에 회계 처리된다.

마. 제작이 완료되고 방영된 이후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

4.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

"제작이 완료되고 방영된 방송프로그램"이 재방영이 확실한 경우는 재방영이 불확실한 경우와 달리 무형자산의 "제작방송프로그램"으로 자산화 한다. 이후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하여 상각을 통하여 비용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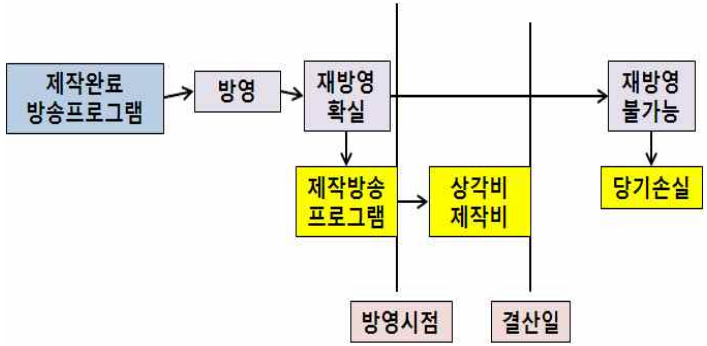

i) "방송프로그램 Q"와 "방송프로그램 R"이 20X1년 8월 15일 방영되고, 재방영이 확실하다고 인식된다.

20X1 8/15
(차) 제작방송프로그램 300,000,000
(대)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지출액(Q) 300,000,000
혹은 방송프로그램선급금(R) 300,000,000

ii) 20X1년 12월 31일 재방영 경험율 등을 고려하여 상각하고 비용화 한다. 내용연수가 3년이고 재방영 경험에 의하여 20X1년의 상각율이 1/3이라면, 상각비와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는 100,000,000원이 되며, 장부가액은 200,000,000이 된다.

20X1 12/31
(차) 상각비 100,000,000
(대) 상각누계액 100,000,000

20X1 12/31
(차) 방송프로그램제작비 100,000,000
(대) 상각비 100,000,000

iii) 무형자산 계상 후에 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된 경우,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상기의 예에서 20X2년 1년동안 재방영되지 못했으며, 결산일에 재방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부가액 200,000,000원을 모두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20X2 12/31
(차) 손상차손 200,000,000
(대) 손상차손누계액 200,000,000

제18조(구입 방송프로그램)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구입(임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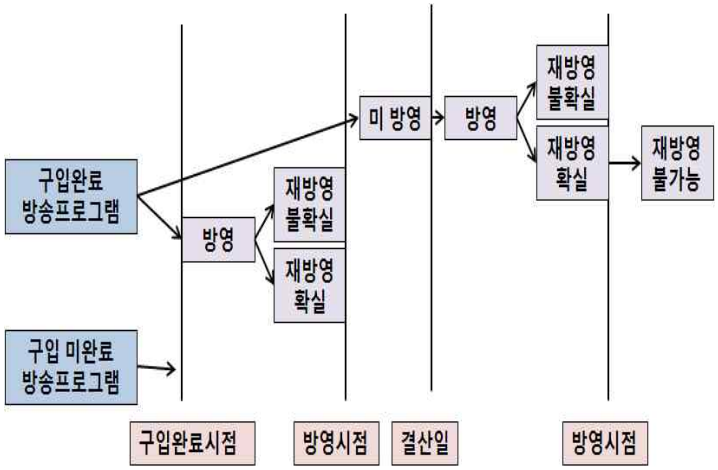

본 조는 사업자가 구입 혹은 임차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회계처리는 구입완료시점, 방영시점 혹은 결산일에 수행하게 되며, 회계처리 방법은 방송프로그램의 구입 완료 여부, 방영여부, 재방영 여부와 재방영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

2. 회계처리

가. 거래발생시점

방송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구입과정에서 관련 지출액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하여 거래를 발생시키는 시점에서의 회계처리를 살펴보자. “방송프로그램 R”를 구입하기 위하여 20X1년 7월 31일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차변에 계약금 50,000,000원, 대변에 현금 50,000,000원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한다. 방송프로그램 구입과 관련된 거래는 이와 같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회계처리 한다.

20X1 7/31
(차) 계약금 50,000,000
(대) 현금 50,000,000

나.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

1.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구입 완료 시점까지 선급금(방송프로그램선급금)으로 처리한다. 구입 완료 시점이란 구입 대가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구입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을 말한다.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사업자의 회계연도 내에서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면, 구입기간이 통상적인 회계기간인 1년 보다 큰 경우 혹은

구입기간이 2개의 회계연도에 걸친 경우를 의미한다.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방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동자산인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하되 일반적인 선급금과 구별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상거래를 인식하는 구입완료 시점이란 구입 대가 지급과 관련 없이 구입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20X1 회계연도 결산일에 제작미완료인 "방송프로그램 T"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방송프로그램 T"는 20X1년 6월에 구입을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구입과 관련하여 100,000,000을 지출하였으며, 20X2년 7월 31일까지 구입과 관련하여 200,000,000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한 후 방송프로그램을 구입·완료하였다. "방송프로그램 S"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20X1 12/31
(차) 방송프로그램선급금 100,000,000
(대) 방송프로그램 구입관련 지출액 100,000,000

20X2 7/31
(차) 방송프로그램선급금 200,000,000
(대) 방송프로그램 구입관련 지출액 200,000,000

방송프로그램 구입이 완료된 이후의 회계처리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영, 미방영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된다.

다. 구입이 완료되고 방영된 이후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

2.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어 방영되었으나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영시점에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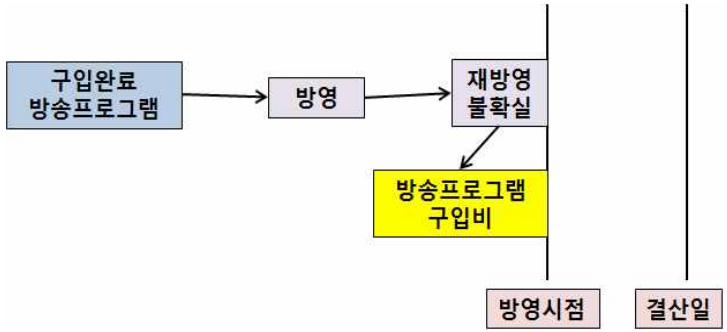

구입완료 방송프로그램은 "방송프로그램 U"와 같이 당기인 20X1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00,000,000원을 지출하여 구입·완료된 경우와 전기인 20X0 회계연도에 구입활동을 시작하여 당기인 20X1 회계연도 7월 31일까지 300,000,000원을 지출하여 구입·완료된 "방송프로그램 V"가 있을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 U와 V"가 결산일 이전에 방영되는 시점에서 재방영이 불확실 하다고 판단되면 '방송프로그램 구입비'로 아래와 같이 비용화 하여야 한다.

20X1 7/31
(차) 방송프로그램구입비 300,000,000
(대) 방송프로그램 구입관련 지출액 (U) 300,000,000
혹은 방송프로그램선급금(V) 300,000,000

라. 구입이 완료되고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그램

3. 결산기일 현재 구입 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후 방영시점에 재방영 여부를 고려하여 매출원가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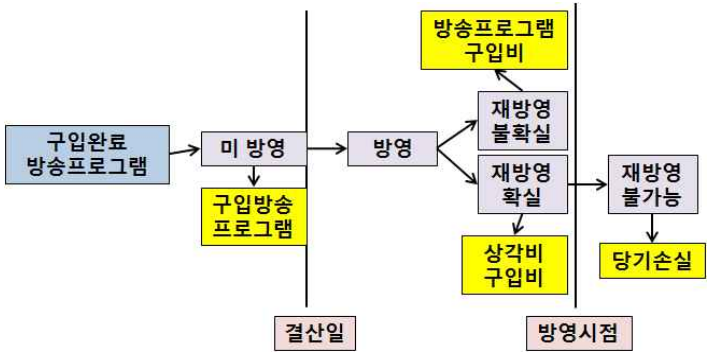

만약 "방송프로그램 W" 는 20X1 회계연도 결산일 이전에 300,000,000원을 지출하고 구입 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않은 경우, 결산일에 무형자산인 방송프로그램의 구입 방송프로그램으로 회계처리 한다.

20X1 12/31
(차) 구입방송프로그램 300,000,000
(대) 방송프로그램 구입관련 지출액 300,000,000

미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W"가 방영되는 경우 구입이 완료되고 방영된 방송프로그램과 같이 재방영 여부 등에 따라 방영시점에 회계처리 된다.

마. 구입이 완료되고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 4. 결산일 현재 구입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계약조건,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

"구입이 완료되고 방영된 방송프로그램"의 재방영이 확실한 경우는 재방영이 불확실한 경우와 달리 무형자산의 "구입방송프로그램"으로 자산화 한다. 이후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하여 상각을 통하여 비용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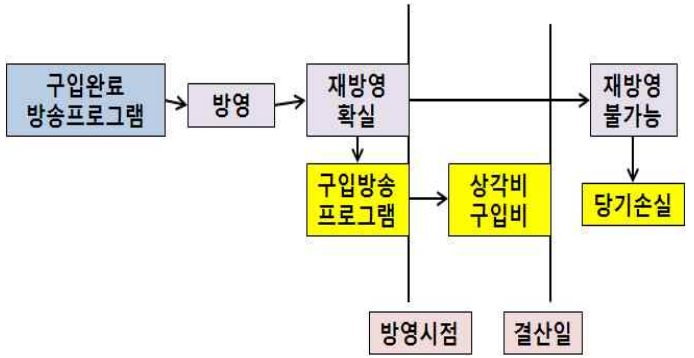

i) "방송프로그램 U"와 "방송프로그램 V"가 20X1년 8월 15일 방영되고, 재방영이 확실하다고 인식된다.

20X1 8/15
(차) 구입방송프로그램 300,000,000
(대) 방송프로그램 구입관련 지출액 (U) 300,000,000
혹은 방송프로그램선급금(V) 300,000,000

ii) 20X1년 12월 31일 재방영 경험율 등을 고려하여 상각하고 비용화 한다. 내용연수가 3년이고 재방영 경험에 의하여 20X1년의 상각율이 1/3이라면, 상각비와 방송프로그램 구입비는 100,000,000원이 되며, 장부가액은 200,000,000이 된다.

20X1 12/31
(차) 상각비 100,000,000
(대) 상각누계액 100,000,000

20X1 12/31
(차) 방송프로그램구입비 100,000,000
(대) 상각비 100,000,000

iii) 무형자산 계상 후에 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된 경우,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상기의 예에서 방송프로그램을 한 차례 방영한 이후 20X2년 12월 31일 재방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부가액을 200,000,000원을 모두 손상차손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20X2 12/31
(차) 손상차손 200,000,000
(대) 손상차손누계액 200,000,000

[참고] 방송프로그램 회계처리 비교

1. 기존 회계처리 지침

1) 제작 방송콘텐츠

구분	결산기일 현재		결산기일 이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작진행 상태	방영상태	재방영 가능여부	자산계정	손익계정
1	제작완료	방영	확실	무형자산 (방송콘텐츠)	방영시점부터 합리적 기간동안 상각(영업비용)
2			불확실	-	방송제작비(직접비용), 인건비, 간접제작비용으로 구분하여 영업비용처리
3	제작중 or 제작완료	미방영	확실	무형자산 (방송콘텐츠)	방영시점부터 합리적 기간동안 상각(영업비용)
4			불확실	선급금 또는 재고자산	방송제작비(직접비용) 인건비, 간접제작비용으로 구분하여 영업비용처리

2) 외부구입

구분	사용계약 기간	재방영 가능여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산계정	손익계정
1	장기	-	무형자산 (판권 등)	방영시점부터 합리적 기간동안 상각(영업비용)
2	장기사용 계약아님	확실 (기간계약이 아닌회수조건 등)	무형자산 (판권 등)	
3		불확실	선급금 또는 재고자산	방영시점에 프로그램사용료(영업비용)

2. 현행 회계처리 지침

1) 제작방송프로그램

구분	결산기일 현재		결산기일 이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작진행 상태	방영상태	재방영 가능여부	자산계정	손익계정
1	제작완료	당기 방영	확실	무형자산 (제작방송 프로그램)	방영시점부터 합리적 기간 동안 상각(당기 상각액 (방송프로그램제작비)에 대한 매출원가명세서 작성)
2			불확실	-	당기 매출원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매출원가명세서 작성)
3		미방영	-	무형자산 (제작방송 프로그램)	방영시점에 재방영여부를 고려하여 원가처리
4	제작중	-	-	방송 프로그램 선급금	제작완료시점에 무형자산으로 이전된 후 무형자산의 비용화 절차 따름

※ 제작 완료되어 결산일 현재 미방영 상태인 방송프로그램은 방영시점에 재방영여부를 고려하여 당기 매출원가처리하거나 합리적 기간 동안 상각을 통하여 매출원가 처리한다.

※ 장기 제작물의 경우 원고료 등의 선급금은 최종 제작 완료전이라도 총 방영 횟수를 추정하여 회당 제작비 원가 처리시 반영하여 처리한다.

예) 24부작 사극 원고료 12억을 선급한 경우 지급시 방송프로그램선급금 처리하였고 당기 12부 방영(재방영 불확실)되었기에 당기 원가 처리시 6억(=12억*12부/24부)의 원고료를 매출원가 처리하였다.

2) 구입방송프로그램

구분	결산기일 현재		결산기일 이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작진행 상태	방영상태	재방영 가능여부	자산계정	손익계정
1	구입완료	당기 방영	확실	무형자산 (구입방송 프로그램)	방영시점부터 합리적 기간 동안 상각(당기 상각액 (방송프로그램구입비)에 대한 매출원가명세서 작성)
2			불확실	-	당기 매출원가 방송프로그램구입비 (매출원가명세서 작성)
3		미방영	-	무형자산 (구입방송 프로그램)	방영시점에 재방영여부를 고려하여 원가처리
4	구입중	-	-	방송 프로그램 선급금	구입완료시점에 무형자산으로 이전된 후 무형자산의 비용화 절차 따름

※ 구입 완료되어 결산일 현재 미방영 상태인 방송프로그램은 방영시점에 재방영여부를 고려하여 당기 매출원가처리하거나 합리적 기간 동안 상각을 통하여 매출원가 처리한다.

※ 장기사용계약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사용기간 동안 재방영이 확실하다면 합리적 기간 동안 상각하고, 재방영이 불확실하다면 방영된 분량(총 104부작 사극을 2년간 사용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당기 52부작 방영했다면 52부작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구입비용을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3. 방송프로그램 명세서

* 편의상 제작방송프로그램만 존재한다고 가정함

구분		제작		구입	
		재무상태표	금액	재무상태표	금액
기초금액		방송프로그램선급금	1,000	방송프로그램선급금	
		무형자산 (제작방송프로그램)	2,000	무형자산 (구입방송프로그램)	
		소계	3,000	소계	
당기증가		방송프로그램선급금 증가	3,000	방송프로그램선급금 증가	
		무형자산 증가*	-	**무형자산 증가***	
		소계	3,000	소계	
당기감소	매출원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2,500	방송프로그램구입비	
	영업외비용	무형자산손상차손	500	무형자산손상차손	
		소계	3,000	소계	
기말금액		방송프로그램선급금	2,000	방송프로그램선급금	
		무형자산 (제작방송프로그램)	1,000	무형자산 (구입방송프로그램)	
		소계	3,000	소계	

* 무형자산 당기 증가분 중 방송그로그램선급금이 당기 제작 및 구입 완료되어 무형자산으로 대체됨으로써 증가한 무형자산 증가금액은 제외한다.

선급금

기초	1,000	무형자산이전	2,000
증가	3,000	기말	2,000
계	4,000	계	4,000

무형자산

기초	**2,000**	**매출원가**	**2,500**
미방영	1,000	재방영X	2,000
재방영	1,000	재방영 상각	500
증가	**2,000**	**손상차손**	**500**
선급금 이전	2,000	**기말**	**1,000**
		미방영	500
		재방영	500
계	**4,000**	**계**	**4,000**

제6장 보 칙

제19조(회계자료의 제출시기 등) ①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회계자료의 양식은 별지와 같다.
② 사업자는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제1항에 따른 회계자료 및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으로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지

본 조는 회계자료 양식, 회계자료 및 감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 회계자료

회계자료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매출액명세서, 결합판매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협찬매출액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영업통계와 재산상황 경영자확인서가 있다.

2.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재무제표의 감사결과를 단문형식으로 그 내용은 감사범위와 감사의견으로 나우어진다. 반면에 검토보고서는 감사보고서와는 달리 실사없이 실시한 재무제표의 감사결과 보고서.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외감법 제2조는 외부인의 감사인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외감법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

<외감법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제20조(회계자료의 관리 기록) ① 사업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회계자료 분류항목에 대한 분류부호 체계를 마련하고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12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와 관련한 회계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요지

본 조는 회계자료의 관리 및 기록에 관한 사항를 설명하고 있다.

2. 징수 관련 회계자료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대상인 방송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율(2016. 9. 20. 기준)>

구 분	부과기준	징수율	
지상파방송 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KBS	2.87/100
		EBS	1.54/100
		MBC	4.3/100
		SBS	4.3/100
		부산 MBC	2.3/100

		대구 MBC	2.3/100
		광주 MBC	2.3/100
		대전 MBC	2.3/100
		전주 MBC	2.3/100
		MBC 경남	2.3/100
		춘천 MBC	2.3/100
		청주 MBC	2.3/100
		제주 MBC	2.3/100
		울산 MBC	2.3/100
		목포 MBC	1.3/100
		여수 MBC	1.3/100
		안동 MBC	2.3/100
		원주 MBC	1.3/100
		충주 MBC	1.3/100
		포항 MBC	2.3/100
		강원영동 MBC	2.3/100
		OBS	2.3/100
		KNN	2.3/100
		대구방송	2.3/100
		광주방송	2.3/100
		대전방송	1.15/100
		전주방송	1.3/100
		청주방송	1.3/100
		울산방송	1.3/100
		G1	2.3/100
		제주방송	1.3/100
		경인방송	0.3/100
		경기방송	0.3/100
		YTN 라디오	0.3/100
		불교방송	1.3/100
		평화방송	0.65/100
		기독교방송	2.3/100
		원음방송	0.3/100
		극동방송	0.3/100
		교통방송	0.3/100
		광주영어	0.15/100
		부산영어	0.3/100
		YTN DMB	0.15/100
		한국DMB	0.3/100
		유원미디어	0.15/100
		KBS DMB	0.3/100
		MBC DMB	0.3/100
		SBS DMB	0.3/100

종합편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0.5/100
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0.5/100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방송서비스 매출액	매출액 100억원 이하	1.0/100
		매출액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100
		매출액 200억원 초과	2.3/100
위성방송 사업자	방송서비스 매출액	일반위성방송사업자	1.33/100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방송서비스 매출액	IPTV사업자	1.0/100
홈쇼핑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방송사업관련 결산상 영업이익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겸업자 포함)	13/100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10/100

비 고 : 1.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은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에 징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과한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은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구간별 징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상품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의 이익은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텔레비전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구분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산정한다.

부과 대상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무제표상 영업이익 + 재무제표상 분담금 납부금액 - 전년도 납부분담금) X (방송서비스매출액 / 전체수익)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홈쇼핑방송매출수익 - 해당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3. 보존기간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자료를 5년간 보존하는 이유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에 의하여 분담금이 과・오 산정된 경우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방송사업자가 분담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제21조(회계자료의 검증)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1. 요지

본 조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설명하고 있다.

제22조(재산상황의 공표 및 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해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재산상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1. 요지

본 조는 사업자의 재산상황의 공표 및 공개를 설명하고 있다.

2. 영업 비밀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경쟁상의 우위확보를 위하여 많은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비밀정보로서 기술상 정보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재산상황의 공표 및 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매년말 제출하는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공개되는 재산상황은 방송사업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이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요지

본 조는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동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설명하고 있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2014. 11. 14 일부개정)로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 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 훈령 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편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다.

〈부 록〉

1.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작성예제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해설

3. 영업보고서 별지 서식

4. 관련 법조항

부록 1)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작성예제

1) 예제 1: 제작완료 – 미방영

① 12/31/x1

(차) 선급금	100,000		
		(대) 제작관련 지출액	100,000

② 7/31/x2

(차) 선급금	200,000		
		(대) 제작관련 지출액	200,000

기초 선급금 = 100,000
기말 선급금 = 100,000 + 200,000 - 0 = 300,000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제X(당)기 200x년 xx월 xx일부200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구분		제작방송프로그램		구입방송프로그램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기초금액		선급금	100,000	선급금	
		무형자산		무형자산	
		소계	100,000	소계	
당기증가		선급금증가	200,000	선급금증가	
		무형자산 증가		무형자산 증가	
		소계	200,000	소계	
당기감소	매출원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방송프로그램구입비	
	영업외비용	무형자산손상차손		무형자산손상차손	
		소계		소계	
기말금액		선급금	300,000	선급금	
		무형자산		무형자산	
		소계	300,000	소계	

2) 예제 2: 제작완료– 방영– 재방영 불확실

① 12/31/x1

(차) 선급금 100,000 (대) 제작관련 지출액 100,000

② 7/31/x2

(차) 선급금 200,000 (대) 제작관련 지출액 200,000

③ 7/31/x2

(차) 방송프로그램제작비 300,000 (대) 선급금 300,000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제X(당)기 200x년 xx월 xx일부200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구분		제작방송프로그램		구입방송프로그램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기초금액		선급금	100,000	선급금	-
		무형자산	-	무형자산	-
		소계	100,000	소계	-
당기증가		선급금증가	200,000	선급금증가	-
		무형자산 증가	-	무형자산 증가	-
		소계	200,000	소계	-
당기감소	매출원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300,000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영업외비용	무형자산손상차손	-	무형자산손상차손	-
		소계	300,000	소계	-
기말금액		선급금	-	선급금	-
		무형자산	-	무형자산	-
		소계	-	소계	-

3) 예제 3: 제작완료 –방영 – 재방영 확실

① 12/31/x1

(차) 선급금	100,000		
		(대) 제작관련 지출액	100,000

② 7/31/x2

(차) 선급금	200,000		
		(대) 제작관련 지출액	200,000

③ 7/31/x2

(차) 무형자산	300,000		
		(대) 선급금	300,000

④ 7/31/x2

(차) 상각비(매출원가)	100,000		
		(대) 무형자산	100,000

기초 선급금 = 100,000
기중 선급금 증가 = 200,000
매출원가(무형자산상각비) = 100,000
기말 선급금 = 100,000 + 200,000 - 300,000 = 0
무형자산 기말 = 기초 + 기중 - 매출원가 = 300,000 - 100,000 = 200,000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제X(당)기 200x년 xx월 xx일부200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구분		제작방송프로그램		구입방송프로그램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기초금액		선급금	100,000	선급금	-
		무형자산	-	무형자산	-
		소계	100,000	소계	-
당기증가		선급금증가	200,000	선급금증가	-
		무형자산 증가	-	무형자산 증가	-
		소계	200,000	소계	-
당기감소	매출원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100,000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영업외비용	무형자산손상차손	-	무형자산손상차손	-
		소계	100,000	소계	-
기말금액		선급금	-	선급금	-
		무형자산	200,000	무형자산	-
		소계	200,000	소계	-

4) 예제 4: 제작완료– 방영 – 재방영– 손상차손

① 12/31/x1

(차) 선급금	100,000		
		(대) 제작 관련 지출액	100,000

② 7/31/x2

(차) 선급금	200,000		
		(대) 제작 관련 지출액	200,000

③ 7/31/x2

(차) 무형자산	300,000		
		(대) 선급금	300,000

④ 7/31/x2

(차) 상각비(매출원가) 100,000
(대) 무형자산 100,000

⑤ 12/31/x2

(차) 손상차손 200,000
(대) 무형자산 200,000

기초 선급금 = 100,000 기중 선급금 증가 = 200,000
매출원가(무형자산상각비) = 100,000
손상차손 = 200,000
기말 선급금 = 100,000 + 200,000 - 300,000 = 0
무형자산 기말 = 기초 + 기중 - 매출원가 - 손상차손 = 300,000 - 100,000 -200,000 = 0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제X(당)기 200x년 xx월 xx일부200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구분		제작방송프로그램		구입방송프로그램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기초금액		선급금	100,000	선급금	-
		무형자산	-	무형자산	-
		소계	100,000	소계	-
당기증가		선급금증가	200,000	선급금증가	-
		무형자산 증가	-	무형자산 증가	-
		소계	200,000	소계	-
당기감소	매출원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100,000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영업외비용	무형자산손상차손	200,000	무형자산손상차손	-
		소계	300,000	소계	-
기말금액		선급금	-	선급금	-
		무형자산	-	무형자산	-
		소계	-	소계	-

부록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해설

계정과목	해 설
[자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재고자산 외 유동자산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1) 현금	보유 현금 즉,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및 당좌예금 등 요구불 예금 등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정부보조금 등을 차감한 금액
2) 현금성자산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 경우 차감한 금액으로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단기예금,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단기투자자산,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당좌차월,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은행거래약정 등이 있다.
3) 기타 현금 및 현금성자산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 경우 차감한 금액
2. 단기투자자산	①지분법 투자자산, ②매출채권, ③현금 및 현금성자산, ④단기대여금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중 유동성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계정을 예로 들 수 있다.
1) 유동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최초인식시점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 중 유동성 항목
2) 유동매도가능 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다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중 유동성 항목 (1) 대여금 및 수취채권 (2) 만기보유금융자산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3) 유동만기보유 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 중 유동성 항목. 다만, 다음을 제외함. (1)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2) 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 (3) 금융자산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4)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 제외)으로 유동성 항목에 해당하는 것.

계정과목	해 설
5) 유동파생상품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서반 제6장 파생상품 및 K-IFRS기준서 제1039호의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나 기타 계약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함. 다만, 금융보증계약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함. 이러한 파생상품자산은 상기의 유동당기 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표시하거나 별도로 '유동파생상품자산'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음.
6) 기타유동금융자산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유동성 금융자산
3. 단기대여금	대여증서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대여를 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채권으로 대여처에 따라 종업원대여금, 관계회사대여금, 기타의 대여금으로 구분되기도 함. 단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충당금, 정부보조금이 있다면 제거한 순액으로 한다.
4. 매출채권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중 유동성 항목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 제거한 순액으로 한다.
(대손충당금)	
5. 미수금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중 유동성 항목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 제거한 순액으로 한다.
(대손충당금)	
6. 미수수익	당기에 귀속되는 수익 중 미수된 금액으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으로 대손충당금 등을 제거한 순액으로 한다.
7. 선급금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선지급된 금액으로 본 지침 제13조(선급금)과 같이 일반선급금과 방송프로그램선급금으로 구분함
(대손충당금)	
8. 선급비용	선급된 비용중 1년 내에 비용으로 되는 부분
9. 이연법인세자산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이 회수나 결제되는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시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 혹은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이월액과 관련하여 결산일로부터 일년이내에 회수될 수 있는 법인세 금액
10. 당기법인세자산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법인세 초과 납부로 인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거나 납부할 금액에서 상계할 금액
11. 기타당좌자산	1~10 계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당좌자산

(2) 재고자산	본 지침 제9조(재고자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
II.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2. 장기투자증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등을 말함
3. 장기대여금	대여증서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대여를 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채권으로 대여처에 따라 종업원대여금, 관계회사대여금, 기타의 대여금으로 구분되기도 함. 장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충당금, 정부보조금이 있다면 제거한 순액으로 한다.
(대손충당금)	
4. 기타투자자산	장기금융자산,비유동파생상품자산 등과 투자부동산(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말한다.
(2). 유형자산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함
A. 방송통신설비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기타 설비자산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방송설비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2항제1호 및 해설서에 따름
(감가상각누계액)	
2. 단말장치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2항제2호 및 해설서에 따름
(감가상각누계액)	
3. 전송설비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2항제3호 및 해설서에 따름
(감가상각누계액)	
4. 선로설비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2항제4호 및 해설서에 따름
(감가상각누계액)	
5. 정보처리설비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2항제5호 및 해설서에 따름
(감가상각누계액)	
6. 전원설비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2항제6호 및 해설서에 따름
(감가상각누계액)	

7. 건설중인 자산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2항제7호 및 해설서에 따름
8. 기타 방송통신유형자산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2항제8호 및 해설서에 따름
(감가 상각누계액)	
B. 일반지원자산	방송통신설비외 유형자산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토지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3항제1호 및 해설서에 따름
2. 건물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3항제2호 및 해설서에 따름
(감가상각누계액)	
3. 구축물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3항제3호 및 해설서에 따름
(감가상각누계액)	
4. 비품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3항제4호 및 해설서에 따름
(감가상각누계액)	
5. 차량운반구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3항제5호 및 해설서에 따름
(감가상각누계액)	
6. 건설증인자산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3항제6호 및 해설서에 따름
7. 기타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3항제7호 및 해설서에 따름
(감가상각누계액)	
(3). 무형자산	
1. 영업권	본 지침 제11조(무형자산의 분류)제1호 및 해설서에 따름
2. 방송프로그램	본 지침 제11조(무형자산의 분류)제2호 및 해설서에 따름
1) 제작방송프로그램	
2) 구입 방송프로그램	
3. 개발비	본 지침 제11조(무형자산의 분류)제3호 및 해설서에 따름
4. 기타 무형자산	본 지침 제11조(무형자산의 분류)제4호 및 해설서에 따름
(4) 기타 비유동자산	(1)내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유동자산으로 장기이연법인세자산, 장기매출채권, 장기선급금 등이 해당됨
자산총계	

[부채]	
I. 유동부채	
1. 매입채무	금융부채의 하나로,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서 보고기간 후 12개월(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상환을 통하여 소멸되는 것
2. 단기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및 K-IFRS 제1001호에 따라 유동성으로 분류되는 차입금
3 미지급금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 중 보고기간 말 현재 미지급된 금액 중 유동성 항목
4. 미지급비용	일정기간 계속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기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용 중 유동성 항목
5. 이연법인세부채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이 회수나 결제되는 미래 회계기간의 과소소득(세무상 결손금)결정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결산일로부터 일년이내에 가산할 법인세
6. 당기법인세부채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금융부채 중 유동성 항목
7. 기타유동부채	1내지 6에 해당하지 않는 유동부채로써 예수금, 선수수익, 단기금융리스부채 등이 해당
II. 비유동부채	
1. 장기차입금	보고기간 후 1년 후에 결제될 예정인 차입금
2. 퇴직급여충당부채	근속 중인 임직원이 미래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추정치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 등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
(퇴직급여충당부채차감)	과거 납부한 국민연금전환금의 잔액 등과 같은 퇴직급여채무의 차감계정
3. 기타 충당부채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중 결산일 로부터 일년 이내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외 충당부채
4. 이연법인세부채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이 회수나 결제되는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시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
5. 기타 고정부채	1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비유동부채로써 장기매입채무,

부채총계	장기미지급금, 장기미지급비용, 사채, 장기선수수익 등이 해당

[자본]	
I. 자본금	주주의 납입자본금으로,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을 포함
II. 자본잉여금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고는 잉여금으로 주식발행초과금, 채무면제이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이 해당
III. 자본조정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으로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선택권, 출자전환채무,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 등이 해당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평가잉여금,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의 잔액
V. 이익잉여금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
1. 이익준비금	기업에 유보되는 이익 중 상법 제258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준비금
2.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외 법령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
3. 임의적립금	법령의 요구사항이 아닌,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배당평균적립금・결손보전적립금 및 세법상 적립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입된 준비금 등
4.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처분전 이익잉여금 또는 처리전 결손금.
자본총계	
[자본과부채총계]	

부록 3) 영업보고서 별지 서식

서 식	구 분
제1호 서식	재무상태표
제2호 서식 손익계산서	제2-1호 서식 지상파방송사업자 손익계산서
	제2-2호 서식 유료방송사업자 손익계산서
	제2-3호 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손익계산서
제3호 서식 매출액명세서	제3-1호 서식 지상파방송사업자 매출액명세서
	제3-2호 서식 유료방송사업자 매출액명세서
	제3-3호 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 매출액명세서
제4호 서식	결합판매명세서
제5호 서식 매출원가명세서	제5-1호 서식 지상파방송사업자 매출원가명세서
	제5-2호 서식 유료방송사업자 매출원가명세서
	제5-3호 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 매출원가명세서
제6호 서식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제7호 서식	협찬매출액명세서
제8호 서식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제9호 서식 영업통계	제9-1호 서식 지상파방송사업자 영업통계
	제9-2호 서식 유료방송사업자 영업통계
	제9-3호 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 영업통계
제10호 서식	재산상황 경영자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재무상태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 현재
제X(전)기 20XX년 XX월 XX일 현재

기업명: (단위 : 원)

과 목		회계연도		비율분석	
		20X1년	20X2년	20X1년	20X2년
자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단기투자자산				
	3. 단기대여금				
	4.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5. 미수금				
	(대손충당금)				
	6. 미수수익				
	7. 선급금				
	(대손충당금)				
	가. 일반 선급금				
	나. 방송프로그램 선급금				
	8. 선급비용				
	9. 이연법인세자산				
	10. 당기법인세자산				
	11. 기타당좌자산				
(2)	재고자산				
Ⅱ.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 장기투자증권				
	3.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4. 기타투자자산				
(2)	유형자산				
	A. 방송통신설비				
	1. 방송설비				
	(감가상각누계액)				
	2. 단말장치				
	(감가상각누계액)				
	3. 전송설비				
	(감가상각누계액)				
	4. 선로설비				
	(감가상각누계액)				
	5. 정보처리설비				
	(감가상각누계액)				
	6. 전원설비				
	(감가상각누계액)				
	7. 건설중인 자산				
	8. 기타 방송통신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B. 일반지원자산				
	1. 토지				
	2.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3.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4.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5.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6. 건설중인 자산				
	7. 기타				
	(감가상각누계액)				
(3)	무형자산				
	1. 영업권				
	2. 방송프로그램				
	가. 제작 방송프로그램				
	나. 구입 방송프로그램				
	3. 개발비				
	4. 기타 무형자산				
(4)	기타 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부채					
Ⅰ.	**유동부채**				
	1. 매입채무				
	2. 단기차입금				
	3. 미지급금				
	4. 미지급비용				
	5. 이연법인세부채				
	6. 당기법인세부채				
	7. 기타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1. 장기차입금				
	2.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차감)				
	3. 기타 충당부채				
	4. 이연법인세부채				
	5. 기타고정부채				
부채 총 계					
자본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Ⅲ.	**자본조정**				
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Ⅴ.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별지 제2-1호 서식)

지상파방송사업자 손익계산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제X(전)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과 목			회계연도		비율분석	
			20X1년	20X2년	20X1년	20X2년
Ⅰ.	**매출액**					
(1)	방송사업매출액					
	1.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매출액				
	2.	재송신매출액				
	3.	방송프로그램제공 매출액				
	4.	광고매출액				
	가.	지상파광고매출액				
	나.	지상파DMB 광고매출액				
	다.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				
	5.	협찬매출액				
	6.	방송프로그램판매 매출액				
	7.	기타 방송사업매출액				
(2)	기타사업매출액					
Ⅱ.	**매출원가**					

	1.	방송프로그램비용				
	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2.	기타				
Ⅲ.	**매출총이익**					
Ⅳ.	**판매관리비**					
	1.	인건비				
	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3.	무형자산상각비				
	4.	복리후생비				
	5.	세금과공과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나.	기타세금과공과				
	6.	광고대행수수료				
	7.	지급수수료				
	8.	지급임차료				
	9	교육훈련비				
	10.	기타				
V.	**영업손익**					
VI.	**영업외수익**					
	1.	이자수익				
	2.	지분법 이익				
	3.	기타 영업외수익				

VII.	**영업외비용**				
	1. 이자비용				
	2. 기부금				
	3. 지분법 손실				
	4. 기타 영업외비용				
VIII.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손익**				
IX.	**계속사업법인세비용**				
X.	**계속사업손익**				
XI.	**중단사업손익**				
	(법인세효과 : XXX원)				
XII.	**당기순손익**				

(별지 제2-2호 서식)

유료방송사업자 손익계산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제X(전)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원)

과 목		회계연도		비율분석	
		20X1년	20X2년	20X1년	20X2년
Ⅰ.	**매출액**				
(1)	방송사업매출액				
1.	유료방송수신료매출액				
가.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나.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다.	유료VOD수신료매출액				
라.	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마.	기타수신료매출액				
2.	광고매출액				
3.	협찬매출액				
4.	홈쇼핑송출수수료매츨엑				
5.	가입및시설설치매출액				
6.	단말장치대여(판매)매출액				
7.	위성사용료매출액				
8.	홈쇼핑방송매출액				
9.	기타방송사업매출액				
(2)	기타사업매출액				
1.	전기통신사업매출액				

	2.	기타매출액				
II.	**매출원가**					
	1.	방송프로그램비용				
	가.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나.	방송프로그램 구입비				
	다.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i)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				
		ii) 유료채널프로그램사용료				
		iii) 유료VOD프로그램사용료				
		iv) 재송신비용				
	2.	기타 매출원가				
	가.	전송망사용료				
	나.	위성사용료				
	다.	기타				
III.	**매출총이익**					
IV.	**판매관리비**					
	1.	인건비				
	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3.	무형자산상각비				
	4.	복리후생비				
	5.	세금과공과				
		가.방송통신발전기금				
		나.기타세금과공과				
	6.	광고대행수수료				
	7.	광고선전비				
	8.	판매촉진비				
	9.	지급수수료				

	10.	지급임차료				
	11.	교육훈련비				
	12.	기타				
V.	**영업손익**					
VI.	**영업외수익**					
	1.	이자수익				
	2.	지분법이익				
	3.	기타영업외수익				
VII.	**영업외비용**					
	1.	이자비용				
	2.	기부금				
	3.	지분법손실				
	4.	기타영업외비용				
VIII.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					
IX.	**계속사업법인세비용**					
X.	**계속사업손익**					
XI.	**중단사업손익**					
	(법인세효과 : XXX원)					
XII.	**당기순손익**					

(별지 제2-3호 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손익계산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제X(전)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과 목			회계연도		비율분석	
			20X1년	20X2년	20X1년	20X2년
Ⅰ.	**매출액**					
(1)	방송사업매출액					
	1.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2.	광고매출액				
	3.	협찬매출액				
	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5.	방송시설임대매출액				
	6.	행사매출액				
	7.	홈쇼핑방송매출액				
	가.	수수료매출액				
	나.	상품 등 매출액				
	다.	기타				
	8.	기타방송사업매출액				
(2)	기타사업매출액					
Ⅱ.	**매출원가**					
	1.	방송프로그램비용				
	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2.	기타				

	가.	홈쇼핑송출수수료				
	나.	전송망사용료				
	다.	위성사용료				
	라.	상품 등 매출원가				
	마.	기타				
Ⅲ.	**매출총이익**					
Ⅳ.	**판매관리비**					
	1.	인건비				
	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3.	무형자산상각비				
	4.	복리후생비				
	5.	세금과공과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나.	기타세금과공과				
	6.	광고대행수수료				
	7.	광고선전비				
	8.	지급수수료				
	9.	지급임차료				
	10.	교육훈련비				
	11.	기타				
Ⅴ.	**영업손익**					
Ⅵ.	**영업외수익**					

	1.	이자수익				
	2.	지분법이익				
	3.	기타영업외수익				
VII.	**영업외비용**					
	1.	이자비용				
	2.	기부금				
	3.	지분법손실				
	4.	기타영업외비용				
VIII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					
IX.	**계속사업법인세비용**					
X.	**계속사업손익**					
XI.	**중단사업손익**					
	(법인세효과 : XXX원)					
XII.	**당기순손익**					

(별지 제3-1호 서식)

지상파방송사업자 매출액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과 목			매체구분					특수관계자 매출액
			TV	RADIO	지상파 DMB	기타	합계	
I.	**방송사업매출액**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매출액						
	2.	재송신매출액						
	3.	방송프로그램제공 매출액						
	4.	광고매출액						
	가)	지상파광고매출액						
	나)	이동멀티미디어사업 광고매출액						
	다)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						
	5.	협찬매출액						
	6.	방송프로그램판매 매출액						
	7.	기타방송사업 매출액						
	가)	방송시설임대매출액						
	나)	행사매출액						
	다)	방송발전기금지원액 (프로그램제작지원)						
	라)	기타국고보조금 등 수익						
	마)	기타						

II.	기타사업매출액						
	1. 부동산임대사업매출액						
	2. 출판사업매출액						
	3. 문화사업매출액						
	4. 기타						
합 계							

(주1) 방송사업수익은 매체별(TV/RADIO/지상파DMB)로 작성되어야 하며, 구분이 모호한 것은 기타로 분류한다.

(주2) 사업자의 주된 사업으로써의 임대매출액은 기타사업매출액 대상이며, 부수적인 수준의 임대매출액은 영업외수익 처리한다.

(주3) 특수관계자 여부는 방송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따른다.

(별지 제3-2호 서식)

유료방송사업자 매출액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원)

과 목			아날로그	디지털	기타	합계	특수관계자 매출액
I.	방송사업매출액						
	1.	유료방송수신료매출액					
	가)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나)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다)	유료VOD수신료 매출액					
	라)	중계유선방송수신료 매출액					
	마)	기타수신료매출액					
	2.	광고매출액					
	3.	협찬매출액					
	4.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5.	가입및시설설치매출액					
	6.	단말장치대여(판매)매출액					
	7.	위성사용료매출액					
	8.	홈쇼핑방송매출액					
	가)	수수료매출액					

	나)	상품 등 매출액					
	다)	기타					
	9.	기타방송사업매출액					
	가)	방송발전기금지원액 (프로그램제작지원)					
	나)	기타국고보조금등수익					
	다)	기타					
II.	**기타사업매출액**						
	1.	전기통신사업매출액					
	2.	부동산임대사업매출액					
	3.	기타사업매출액					
	합 계						

(주1) 방송매출액은 아날로그, 디지털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함
(주2) 특수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자로 특수관계자별로 주기표시한다.
(주3)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이란채널단위로묶어파는기본상품의수신료매출액으로한다.
(주4)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이란기본채널단위묶음에포함되지아니하고채널추가에따라채널마다추가요금을받고제공하는채널수신료매출액으로한다.
(주5) 유료VOD수신료매출액이란VOD(PPV등포함)서비스제공에따른매출액으로한다.
(주6) 단말장치 대여(판매)수익은 정상적인 단말장치 판매수익을 포함한다.
(주7) 위성사용료매출액이란위성사업자가위성사용료명목으로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받는대가를말한다.
(주8) 기타방송사업매출액 중 기타는 프로그램제작지원 외 목적으로 지원받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포함한다.

(별지 제3-3호 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원)

과 목			매체구분						특수관계자 매출액
			SO	위성 방송	지상파 DMB	IPTV	기타	합계	
I.	**방송사업매출액**								
	1.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2.	광고매출액							
	3.	협찬매출액							
	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5.	방송시설임대매출액							
	6.	행사매출액							
	7.	홈쇼핑방송매출액							
		가. 수수료매출액							
		나. 상품 등 매출액							
		다. 기타							
	8.	기타방송사업매출액							
		가. 방송발전기금지원액 (프로그램제작지원)							
		나. 기타국고보조금등수익							

		다. 기타							
II.	**기타사업매출액**								
	1.	부동산임대사업매출액							
	2.	기타사업매출액							
합 계									

(주1) 방송매출액은 채널을 공급하는 플랫폼(SO, 위성방송, IPTV 등)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2) 홈쇼핑사업자의 방송매출액은 수수료형태매출액과 직매입 등을 통한 상품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3) 특수관계자 여부는 방송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따른다.

(별지 제4호 서식)

결합판매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원)

구분		결합판매 상품1	결합판매 상품2	결합판매 상품3	…	합 계
방송사업매출액						
통신사업 매출액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기타					
합계						
특수관계자매출액						

(별지 제5-1호 서식)

지상파방송사업자 매출원가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구분		금액		
방송프로그램비용				
① 방송프로그램제작비		직접원가	간접원가	합계
1. 인건비	급여(각종 제수당 포함)			
	잡급			
	퇴직급여			
	소계			
2. 인건비 제외 직·간접제작비	원고출연료			
	음향영상재료비			
	미술재료비			
	기획비			
	제작진행비			
	외부장비이용료			
	외부시설이용료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방송프로그램 외 무형자산)상각비			
	여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피복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법정부담금			
	보험료			
	지급수수료			
	임차료			
	조사연구비			
	회의비			
	기타			
	소계			
3. 외주제작비	외주제작비			
당기 제작원가(1+2+3)				
②방송프로그램 구입비	무형자산(구입방송프로그램) 상각비			
	기타 방송프로그램 구입비			
	소계			
I. 방송프로그램비용(①+②)				
II. 기타				
III. 매출원가(I+II)				

※ 전기이전에 선급금 또는 무형자산(제작방송프로그램) 처리되었던 제작프로그램이 당기 방영된 경우 원가(비용 성격에 따른 원가계정에 각각 기입)처리하며 무형자산 처리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손상차손) 처리한다.

※ III. 매출원가는 I.방송프로그램비용(방송프로그램 제작비과 방송프로그램 구입비)과 II.기타 매출원가로 구성된다.

※ 제작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하여 합리적 기간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경우에도 무형자산상각비 계정이 아닌 당기 상각액을 발생 원천에 따라 인건비/인건비 제외 직·간접 제작비/외주제작비로 구분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별지 제5-2호 서식)

유료방송사업자 매출원가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구분		금액		
방송프로그램비용				
① 방송프로그램제작비		직접원가	간접원가	합계
1. 인건비	급여(각종 제수당 포함)			
	잡급			
	퇴직급여			
	소계			
2. 인건비 제외 직·간접제작비	원고출연료			
	음향영상재료비			
	미술재료비			
	기획비			
	제작진행비			
	외부장비이용료			
	외부시설이용료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방송프로그램외 무형자산)상각비			
	여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피복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법정부담금			
	보험료			
	지급수수료			
	임차료			
	조사연구비			
	회의비			
	기타			
	소계			
3. 외주제작비	외주제작비			
당기 제작원가(1+2+3)				
②방송프로그램 구입비	무형자산(구입방송프로그램)상각비			
	기타 방송프로그램구입비			
	소계			
③방송프로그램사용료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			
	유료채널프로그램사용료			
	유료VOD프로그램사용료			
	재송신비용			
I. 방송프로그램비용 합계(①+②)				
II. 기타 매출원가				
①	전송망사용료			
②	위성사용료			
③	기타			
III. 매출원가(I+II)				

※ 전기이전에 선급금 또는 무형자산 제작프로그램) 처리되었던 제작프로그램이 당기 방영된 경우 원가(비용 성격에 따른 원가계정에 각각 기입)처리하며 무형자산 처리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손상차손) 처리한다.

※ III. 매출원가는 I. 프로그램비용(프로그램 제작비과 프로그램 구입비)과 II. 기타매출원가로 구성된다.

※ 제작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하여 합리적 기간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경우에도 무형자산상각비 계정이 아닌 당기 상각액을 발생 원천에 따라 인건비/인건비 제외 직·간접 제작비/외주제작비로 구분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별지 제5-3호 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원가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구분		금액		
방송프로그램비용				
① 방송프로그램제작비		직접원가	간접원가	합계
1. 인건비	급여 (각종 제수당 포함)			
	잡급			
	퇴직급여			
	소계			
2. 인건비 제외 직·간접제작비	원고출연료			
	음향영상재료비			
	미술재료비			
	기획비			
	제작진행비			
	외부장비이용료			
	외부시설이용료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방송프로그램외 무형자산) 상각비			
	여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피복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법정부담금			
	보험료			
	지급수수료			
	임차료			
	조사연구비			
	회의비			
	기타			
	소계			
3. 외주제작비	외주제작비			
당기 제작원가(1+2+3)				
②방송프로그램 구입비	무형자산(구입방송프로그램) 상각비			
	기타 방송프로그램구입비			
	소계			
I. 방송프로그램비용(①+②)				
II. 기타				
① 홈쇼핑송출수수료				
② 전송망사용료				
③ 위성사용료				
④ 상품 등 매출원가				
⑤ 기타				
III. 매출원가(I+II)				

※ 전기이전에 선급금 또는 무형자산(제작방송프로그램) 처리되었던 제작방송프로그램이 당기 방영된 경우 원가(비용 성격에 따른 원가계정에 각각 기입)처리하며 무형자산 처리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손상차손) 처리한다.

※ III. 매출원가는 I. 방송프로그램비용(방송프로그램 제작비과 방송프로그램 구입비)과 II. 기타매출원가로 구성된다.

※ 제작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하여 합리적 기간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경우에도 무형자산상각비 계정이 아닌 당기 상각액을 발생 원천에 따라 인건비/인건비 제외 직·간접 제작비/외주제작비로 구분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구분		제작 프로그램		구입 프로그램	
			금액		금액
기초금액		방송프로그램 선급금		방송프로그램 선급금	
		무형자산 (제작방송프로그램)		무형자산 (구입방송프로그램)	
		소계		**소계**	
당기증가		방송프로그램 선급금 증가		방송프로그램 선급금 증가	
		무형자산증가(주1)		무형자산가(주1)	
		소계		**소계**	
당기 감소	매출 원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방송프로그램구입	
	영 업 외 비 용	무형자산손상차손		무형자산손상차손	
		소계		**소계**	
기말금액		방송프로그램 선급금		방송프로그램 선급금	
		무형자산 (제작방송프로그램)		무형자산 (구입방송프로그램)	
		소계		**소계**	

(주1) 무형자산 당기 증가분 중 방송프로그램선급금이 당기 제작 및 구입 완료되어 무형자산으로 대체됨으로써 증가한 무형자산 증가금액은 제외한다..

(별지 제7호 서식)

협찬매출액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소재지(주1): (단위: 원)

구분	공익성 캠페인	제작협찬		공익행사 (문화예술, 스포츠등)	기타 (시상품 등)	합계
		자체 제작	외주 제작			
TV						
RADIO						
DMB						
합계						

(주1) 방송사업자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 현재

기업명: (단위: 원)

주주명	출자비중				방송사업자 여부	특수관계 여부 (주2)	외국인 여부 (주3)
	주식수 (개)	투자금액	지분율(%)	변동율 (%) (주1)			
합계(주4)							

(주1) 전기 지분율 52%였던 주주가 당기 50%로 지분율 변동하였다면 변동율은 "-2"로 기재한다.

(주2) 특수관계자 여부는 방송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따른다.

(주3) 주주가 법인인 경우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외국인으로 분류한다.

(주4) 지분율이 5%이상인 주주만 표시하되, 특수관계 주주는 5%미만이라도 모두 기재하고, 기타주주는 기타소액주주로 기재하여 지분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한다.

(별지 제9-1호 서식)

지상파방송사업자 영업통계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 현재

기업명:

(단위:명/개/원)

구분	과 목		TV	RADIO	합계
KBS	**1.**	**가입자수(주1)**			
	가)	**기초 가입자**			
	나)	**순증가입자**			
	①	신규가입자			
	②	해지가입자			
	다)	**기말 가입자**			
	2.	**당기수신료징수비용(주1)**			
	가)	인건비			
	나)	위탁징수비			
	다)	기타경비			
모든 지상파방송사업자	**3.**	**당기광고운영비**			
	가)	인건비			
	나)	광고대행수수료			
	다)	기타경비			
	4.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주3)**			
	①	특수관계자외주			
	②	기타외주			
	5.	**외부구입방송프로그램 (주4)**			
	①	국내구매			
	②	해외구매			

(주1) KBS만 작성: 가입자수 및 수신료 징수비는 KBS의 수신료 징수와 관련된 징수대상가입자수와 한전에 지급하는 위탁징수비 등 징수관련 직접 비용임

(주2) 광고대행수수료는 광고 수입과 관련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KOBACO, MEDIACRE8등)에 지급하는 징수 수수료 및 광고운영 관련 직접비용임

(주3)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의 2(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에 따른다.

(주4) 국내구매: 국내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해외구매: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별지 제9-2호 서식)

유료방송사업자 영업통계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 현재

기업명: (단위:명/개/원)

과 목		아날로그	디지털
1.	**가입자수(주1)**		
가)	**기초가입자**		
나)	**순증가입자**		
①	신규가입자		
②	해지가입자		
다)	**기말가입자**		
2.	**가입자당월평균매출액(ARPU)(주2)**		
가)	기본채널수신료		
나)	유료채널수신료		
다)	단말장치대여(판매)수익		
라)	설치비		
마)	기타가입자수익		
3.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주3)**		
①	특수관계자외주		
②	기타외주		
4.	**외부구입방송프로그램(주4)**		
①	국내구매		
②	해외구매		
5.	**기말채널운영현황(전체)**		
가)	운영채널		
①	비디오		
②	오디오		
③	데이터		
나)	여유채널		
다)	기타채널		
라)	장애채널		

(주1) 가입자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하여 단자수기준 유료방송가입자의 신규 및 해지에 따른 순증가입자와 연말시점 누적가입자수를 기재한다.

(주2) 가입자당월평균매출액(ARPU)는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하여 상품구성항목별 월평균 가입자로부터 벌어들이는 매출액을 기재한다.

(주3)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의 2(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에 따른다.

(주4) 국내구매 : 국내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해외구매 :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주5) 채널운영현황은 전체가용채널을 운영채널수와 여유채널수(예비), 기타채널(망감시), 장애채널수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9-3호 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영업통계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 현재

기업명: (단위:개/원)

과 목		현 황
1.	**채널공급유형(주1)**	
가)	기본형	
나)	유료형	
다)	V O D 형	
라)	기타	
2.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주1)**	
가)	기본형	
나)	유료형	
다)	V O D 형	
라)	기타	
3.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주2)**	
①	특수관계자외주	
②	기타외주	
4.	**외부구입방송프로그램(주3)**	
①	국내구매	
②	해외구매	
5.	**기말방송프로그램송출현황(전체) (주4)**	
가)	종합유선방송(SO)	
나)	위성방송	
다)	지상파디엠비	
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마)	특수관계자	

(주1) 아날로그 및 디지털 구분없이 회사가 송출하는 플랫폼(SO,위성,위성DMB,지상파DMB,IPTV 등)의 채널 유형에 따른 결산일 현재 공급유형을 기록한다.
- 기본형이란 채널단위로 묶어파는 채널에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하며,
- 유료형이란 기본채널 단위 묶음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채널 추가에 따라 채널마다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채널에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 VOD형이란 VOD(PPV 등 포함)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주2)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의 2(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에 따른다.

(주3) 국내구매: 국내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해외구매: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주4) 송출현황은 플랫폼 매체별로 자사의 채널송출수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복수의 플랫폼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중복하여 산출한다.
가)~마)는 특수관계자가 제외된 채널송출수를 개재하고 특수관계자 송출 현황은 바)에 기재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재산상황 경영자확인서

００００ 주식회사 대표이사 ０００과 재산상황 담당자 ０００은 본 재산상황보고서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거짓 또는 왜곡없이 기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재산상황 담당자: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4. 관련 법조항

□ 방송법 제98조의2(재산상황의 공표)

①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매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재산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재산상황 제출 자료 및 시기 등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산상황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2(재산상황의 공표)

① 법 제9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② 법 제9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그 밖에 이에 관한 증명서류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다만, 같은 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로 감사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재산상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제3항

③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의 공공성·수익성과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 및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분담금의 징수) ①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징수율을 정할 때에는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해당 사업자의 수익규모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회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하고, 제2회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